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88

발의연월일: 2024. 12. 20.

발 의 자 : 임호선 · 정준호 · 임미애

이광희 • 문대림 • 전진숙

이원택 • 안호영 • 서삼석

주철현 · 차지호 의위

(11인)

제안이유

우리 농어촌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을 비교해 보면, 200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3,402만원, 농가소득은 2,447만원이었던데 비해 2022년 도시근로자 연 가구소득은 7,811만원,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20년 동안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민에 대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나 적 은 금액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를 보이 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음.

이에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

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 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나. 국가 등의 책무와 농어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 조 및 제4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 무,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마. 시·도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 바. 농어민기본소득은 만 18세 이상의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도록함(안 제11조).
- 사.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자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차.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8조).
- 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정지 결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3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어업·양식업을 말한다.
- 2. "농어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

- 촌 지역을 말한다.
- 4.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5. "농어민기본소득"이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
- 6.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 7. "수급자"란 제14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되어 농어 민기본소득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 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농어민의 권리와 책임) ①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이 법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민기본소득을 소득안정을 위하여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2장 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어민기 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농어민기본소득의 목표 및 추진 방향
 -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3.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 법령 정비
 - 4. 그 밖에 농어민기본소득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 ①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 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 4. 농어업 관련 기관의 대표
- 5.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농어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4. 농어민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조정 실무위 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 제10조(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어민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 제11조(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범위) ① 농어민기본소득은 만 18 세 이상의 농어민에게 개인별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당 농어 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자료조사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 •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농어민기본 소득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3 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신청서를 보내

- 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농어민기본소득 수 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수급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결정 내용을 직접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① 농어민기본소득은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9조에 따라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민

기본소득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 제16조(농어민기본소득의 특례) 이 법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민기본소득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 된 계좌(이하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 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 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기본소 득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만이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농어민기본소득과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④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사후관리

- 제18조(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 본소득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 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2.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3.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수급권의 상실)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국외로 이주한 경우
 - 3. 제11조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제20조(농어민기본소득의 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농어민기본소 득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기본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어민기본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받은 경우
 - 2. 제18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민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 3. 그 밖의 사유로 농어민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농어민기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농어민기본소득(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 는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1조(신고) 농어민기본소득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1.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 2. 제19조 각 호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22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 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 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장 보칙

- 제23조(이의신청) ① 제18조에 따른 지급정지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바로잡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시효)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25조(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농어민기본소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2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과대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 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